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4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만희
김형동 · 고동진 · 최보운
이헌승 · 윤한홍 · 강대식
조승환 · 진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 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

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다음”을 “다음”으로,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매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실시 및 자격 발급 현황
2. 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
3. 자격취득자의 자격 활용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자격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자격관리자가 부실하게 자격검정등을 하는 등 그 등록자격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u>누구든지 다음</u>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u>제외하고는</u>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 ----- <u>다음</u> ----- ----- <u>제외하고</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 - <u>민간자격 관리·운영 능력, 교육훈련과정 구성의 적정성 및 민간자격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의3(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및 평가) ① <u>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매년 주무부장관</u>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실시 및 자격 발급
현황

2. 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

3. 자격취득자의 자격 활용 현
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관
리·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민간자격 평가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
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 -----

-----.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자격관리자가 부실하게
자격검정등을 하는 등 그 등
록자격을 적정하게 관리·운
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1
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